

2020 등록금심의위원회		제1차 회의록(1/4)	
일 시	2020. 01. 03.(금), 16:00~17:00	장 소	600주년기념관 3층 제3회의실
참석위원	배○○, 전○○, 최○○, 박○○, 전○○, 허○○, 유○○		
불참위원	신○○, 정○○		

I. 개 회

- 총장이 등록금심의위원들(이하 위원)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학교 발전 현황과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설명 및 등록금 심의에 대한 당부말씀을 하고 이석하다.
- 학생처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소개 및 참석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다.
- 학생처장이 관례와 규정에 근거하여 기획조정처장을 위원장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묻고, 모든 위원이 이에 동의하다.
- 위원장의 불참으로 인해 학생처장이 위임받아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고, 성원을 확인한 후 개회를 선언하다.

II. 보고 및 심의사항

- 학생처장이 보고사항 보고에 앞서 8년 연속 학부등록금 동결, 학생정원 감축, 대학원충원률 감소 등의 사유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, BK21 후속사업 선정을 위한 대학원장학금 및 사업단 지원, 글로벌 50위 연구력 진입을 위한 연구 투자, 개정 강사법 시행 등의 이유로 지출이 증가하여 학교 재정이 여의치 않음을 설명하다.
- 학생처장이 효율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실무회의 활용을 제안하다. 아울러, 학생위원들의 적극적인 자료 요청을 당부하다.
- 예산기획팀장이 등록금책정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다.
- 학생처장이 참석 위원에게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근거법령 및 규정을 묵독하게 한 후,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를 요청하다.

확 인	위 원	서 명	위 원	서 명	위 원	서 명
	신 ○ ○	불참	박 ○ ○		유 ○ ○	
	배 ○ ○		전 ○ ○			
	전 ○ ○		허 ○ ○			
	최 ○ ○		정 ○ ○	불참		

2020 등록금심의위원회		제1차 회의록(2/4)	
일 시	2020. 01. 03.(금), 16:00~17:00	장 소	600주년기념관 3층 제3회의실
참석위원	배○○, 전○○, 최○○, 박○○, 전○○, 허○○, 유○○		
불참위원	신○○, 정○○		

- 학부 학생위원이 ‘등록금심의위원회내규 제3조1항2호’와 관련하여,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 추천을 학생처장이 추천하는 방식에서 학생위원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대표기구의 선출을 통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내규 개정을 건의하다.
- 총무처장이 예년에도 동일한 논의가 있었음을 언급하며, 학생 대표를 학교에서 추천하는 내용을 개정하자는 의미인지 학부 학생위원에게 질의하다.
- 학부 학생위원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 위원, 학생위원, 전문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학생위원의 경우에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위원과 동등한 위원에 해당하는 만큼 학생처장이 학생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언급하다.
- 총무처장이 학생위원이 언급한 내용이 학생위원은 학생들이 선출한 학생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학생위원에게 다시 질의하다.
- 학부 학생위원이 총학생회장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중앙운영위원회라는 학생의결기구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언급하다.
- 총무처장이 중앙운영위원회 등의 학생의결기구도 구성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학생위원 추천방식은 포괄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다.
- 학생처장이 학생위원 추천 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, 실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설명하다. 아울러,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위원을 추천하고 있음을 부연 설명하다.

	위 원	서 명	위 원	서 명	위 원	서 명
확 인	신 ○ ○	불참	박 ○ ○		유 ○ ○	
	배 ○ ○		전 ○ ○			
	전 ○ ○		허 ○ ○			
	최 ○ ○		정 ○ ○	불참		

2020 등록금심의위원회		제1차 회의록(3/4)	
일 시	2020. 01. 03.(금), 16:00~17:00	장 소	600주년기념관 3층 제3회의실
참석위원	배○○, 전○○, 최○○, 박○○, 전○○, 허○○, 유○○		
불참위원	신○○, 정○○		

- 학부 학생위원이 ‘등록금심의위원회내규 제6조2항’ 과 관련하여, 회의 의결 시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는 조항의 의미에 대해 질의하다.
- 학생처장이 정부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의 일반적인 의사결정 규정을 준용한 조항으로,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시 상황에 따라 이 조항의 취지에 맞게 해석하여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하다.
- 예산기획팀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경우 그 동안 심의사항에 대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해왔음을 추가 언급하다.
- 대학원 학생위원이 ‘등록금심의위원회내규’ 와 관련하여, 학생위원 정수와 의결 정수에 대해 질의하다.
- 예산기획팀장이 위원 정수의 경우 ‘등록금심의위원회내규 제2조2항’ 에 의해 학생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하여야 하며, 의결 정수는 ‘등록금심의위원회내규 제6조2항’ 에 의한다고 설명하다.
- 학부 학생위원이 회계전문지식에 대한 자문 방법에 대해 질의하다.
- 학생처장이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은 예산기획팀에 자문 가능하며,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위원에게도 자문이 가능하다고 답변하다.
- 외부전문가위원이 예산기획팀 질문 이외 추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메일로 질의하면 추가 자문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다.
- 총무처장이 우리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다른 어느 대학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언급하며, 학생위원들에게 실무위원회를 통해 등록금 책정 및 심의와 관련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다.
- 이에 예산기획팀장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실무회의 진행 관례에 대하여 설명하고, 실무회의 내용도 회의록에 기재할 것임을 추가 언급하다.

	위 원	서 명	위 원	서 명	위 원	서 명
확 인	신 ○ ○	불참	박 ○ ○		유 ○ ○	
	배 ○ ○		전 ○ ○			
	전 ○ ○		허 ○ ○			
	최 ○ ○		정 ○ ○	불참		

2020 등록금심의위원회		제1차 회의록(4/4)	
일 시	2020. 01. 03.(금), 16:00~17:00	장 소	600주년기념관 3층 제3회의실
참석위원	배○○, 전○○, 최○○, 박○○, 전○○, 허○○, 유○○		
불참위원	신○○, 정○○		

- 학부 학생위원이 회의기록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생 측에 2명(캠퍼스별 1명)의 간사 배석을 요청하다.
- 총무처장이 학생 측 간사의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역할이 회의내용을 청취하고 기록하는 역할로 제한되므로 심의과정에서 별도의 발언권과 의결권이 없음을 설명하고,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학생 측에 1명의 간사 배석을 제안하다.
- 학생처장이 별도의 발언권 및 의결권이 없음을 전제로 학생 측 간사 1명을 두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묻고, 이에 모든 위원이 동의하다.
- 학생처장이 향후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정에 대해 모든 위원의 의견을 확인한 후, 차기 회의 일정(2020년 1월 8일 오후 2시) 및 차기 이후 회의 일정(2020년 1월 10일)을 확정하다.
- 학생처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생위원들이 학교예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공식 회의 이외에도 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실무회의 논의 사항도 회의록에 기재하는 것에 의견을 묻고, 모든 위원이 이에 동의하다.

Ⅲ. 요청자료

- 학생위원 요청 자료 제공 내역
 - 실무회의에서 2019학년도 추경예산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다.
 - 2016/2017/2018학년도 결산서 4부, 2017/2018/2019학년도 당초/추경예산서 4부

Ⅳ. 폐회

- 17시 00분에 폐회하다.

확 인	위 원	서 명	위 원	서 명	위 원	서 명
	신 ○ ○	불참	박 ○ ○		유 ○ ○	
	배 ○ ○		전 ○ ○			
	전 ○ ○		허 ○ ○			
	최 ○ ○		정 ○ ○	불참		